호우회 동아리 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: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호우회라 한다.

제 2조 :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240호에 둔다.

제 3조 : 본 동아리는 봉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올바른 대학인으로서의 자세를 확립, 민주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호우인의 결합체이다.

제 2장 회원

제 1조 : 본 동아리의 구성원은 숭실대학교의 재학중의 자로서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본 동아리의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제 2조 : 본 동아리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.

1항 : 정회원은 숭실대학교 재학생(학부생)으로서 본 동아리에 소정의 입회원서

를 제출해야 한다.

2항 : 명예회원은 본 대학을 졸업한 정회원 및 활동에 참여한 준회원으로 한다.

3항 : 준회원의 자격 요건, 의무, 권리, 및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

- 자격요건 : 숭실대학교 내 기다 교육기관(전산원, 사회교육원)의 재학생으로서 본 동아리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.

- 의무 : 재활원 및 각종 봉사활동의 의무적 수행(2학기 이상), 본 동아리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 참여

- 권리 : 본 동아리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,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.

-기타 : 1-4이외의 규정은 준하여 적용.

4항 : 휴학생은 정회원이지만 명예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제 3조 : 본 동아리의 입회절차는 본 동아리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조 : 명예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,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.

제 5조 : 본 동아리의 탈퇴절차는 본 동아리가 정하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 또는 본인의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.

제 3장 회원의 의무

제 1조 : 본 동아리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.

1. 정기집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.

2.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임원 회의에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한다.

3. 본 동아리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4. 각종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결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제 2조 :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구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장 임원진

제 1조 : 본 동아리의 활동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원을 조직한다.

제 2조 : 임원진의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고문으로 정의한다.

제 3조 :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 4조 : 회장, 부회장 선출은 동아리 내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, 고문은 선출된 회장, 부회장이 임명한다.

제 5조: 회장은 동아리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6조: 부회장은 동아리의 회계를 담당하고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.

제 7조: 고문은 동아리의 결정사항에서 조언을 담당한다.

제 5장 회의

제 1조 : 본 동아리는 정기집회, 임시총회, 정기총회 및 임원회를 개최한다.

제 2조 :

1. 정기총회는 11월중에 개최하며, 1년 활동의 평가 및 예,결산 심의, 임원 개편을 결정한다.

2.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단독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대해 개최할 수 있다.

3. 정기집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각종 활동을 평가한다.

4.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의, 결정한다.

5. 정기 및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의 2/3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한다. 단, 경조사 또는 수업이 있는 자에 한해 1인 1매의 위임장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.

6. 정시 및 임시총회의 재적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 2주전에 공고한다.

제 6장 활동

제 1조 : 본 동아리는 동아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활동.

2. 대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학습활동.

3. 창조적 지성의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.

4. 기타 본 동아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.

제 2조 : 본 동아리의 제반활동은 회원 및“한호우”의 협조로 수행한다.

제 3조 : 본 동아리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부, 학술부, 섭외부 등을 둔다. 단, 집부의 결정에 의해 필요에 의해 부서를 정할 수 있다.

제 4조 : 부서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여 제반 사무 및 활동을 총괄 관리하고, 각종 회의 개폐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계의 업무를 총괄한다.

3. 학술부장은 학술 연구 및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.

4. 섭외부장은 동아리 회원 간의 상호연락 및 각종행사의 홍보역할을 담당한다.

5. 편집부장은 각종회의의 기록 및 편집물 간행을 총괄한다.

6. 고문은 호우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해줄 의무를 가진다.

제 5조 : 본 동아리의 임원 선출과정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회원 2/3 이상이 참석한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.

2. 궐기 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선임된다.

3. 기타 임원은 차기 회장단의 추천으로 구성된다.

제 7장 제정

제 1조 : 본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및 각종 지원금으로 한다.

제 2조 : 1. 본 동아리의 회비는 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한다.

2. 호우회 졸업 기념 선물 회비 지출은 1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.

제 8장 상벌

제 1조 : 회원 중에 본 동아리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표창한다.

제 2조 : 회원 활동이 동아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.

1. 회장 :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재적회원 2/3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할 수 있다.

2. 임원 :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할 수 있다.

3. 회원 :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동아리 활동 3개월 이상 불참석시 경고를 한 후 3개월경과 후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명 조치된다.

※ 부칙

제 1조 : 본 회칙은 2005년 정기 총회를 통과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2조 : 본 동아리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를 따른다.

제 3조 : 본 회칙은 정기 및 임시총회에 재적회원 2/3이상의 출석과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4조 : 본 동아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기집회 결의로 시행한다.

제 5조 : 당해연도 2학기 중에 그 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부 차장에 임명 할 수 있다.